# 한국모태펀드 2021년 교육계정 출자사업 계획 공고

한국모태펀드 2021년도 교육계정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부 내용				
출자 규모		120억원 이내				
투자 의무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투자총액의 75%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것			
신청 및 선정			- 출자제안서의 접수 : 공고일로부터 3월 31일(수) 14:00 까지 - 출자선정(심의) : '21년 5월			
	조합		유형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홍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출자 대상 및 신청	촉진 법률 따른	처 투 자 ]에 관한 」제12조에 창업초기 에 전문적	관한 12조에 업초기 <b>법인형</b>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단, 과학 기술원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투자하는 <b>투자조합</b>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단, i) 신기술사업금융회사 ii)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업무집행 <i>조</i> 선정방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조합 결 시한	성	최종 선정	일로부터	l 2개월 이내 (단, ·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개월 연장 가능)	

<sup>\*</sup> 창업기획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동운영(Co-GP)인 경우만 가능

#### 2.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 비율
		○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75% 이상 투자 단,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총액의 50% 이상 투자 * 대학창업기업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창업 후 6개월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교육	대학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이하 "창업자") ② 최초 투자 당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대학창업기업 중 ① 유형 기업. 단, 해당 임원이 대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제외	75%
		※ 단, 창업기획자 겸영 기술지주회사(Co-GP 포함)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함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및 출자계획

ᆒᅏ	분 야	시청기가	출자계획		
계정	는 한 약 	신청자격	모태펀드 출자액	결성총액	
모태펀드 (교육)		합계	120억원	160억원	
	대학창업(1유형)	신규 운용사 <sup>주1)</sup>	36억원	48억원	
	대학창업(2유형)	참여 운용사 <sup>주2)</sup>	84억원	112억원	

<sup>\*</sup> 한국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은 최소 7.5억원, 최대 37.5억원이며 자조합 최소결성규모는 10억원임

- 주1) 2017~2020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 대상 2017~2020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가 신규 운용사와 공동운용 (Co-GP)하는 경우 신규 운용사 자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자펀드 부족 시 2유형으로 선정 가능
- 주2) 2017~2020년도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대상, 적격 자펀드 부족 시 1유형으로 선정 가능

# Ⅱ.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주요	호자 조건(	안)		
투자 방법	<ul> <li>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li> <li>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li> <li>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li> <li>*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2.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li> </ul>						
출자 비율	· 75% 이내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대학법인,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5% 이상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운용사 관련 기관 출자금 합산. 단, GP는 약정총액의 5% 이상 출자하며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80%)</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실제 결성 금액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대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대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대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상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li> <li>· 운용사는 제안서 제출 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투자계획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에 대해서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li> <li>&lt;연차별 최소 투자비율&gt;</li> <li>구분 결성일로부터 1년 결성일로부터 2년 결성일로부터 3년 결성일로부터 4년 약정총액 대비 비율</li> <li>20% 40% 60% 80%</li> </ul>						
출자금 납입방식	· 수시납(cap	rital call)					
조합 존속기간	· 존속기간 최대 10년 이내, 투자기간 최대 4년 이내 운용사 자율제안						
관리보수	총 50억원 규모 펀드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 0.2%p하향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2.5% 초과하는 2.3% 초과하는 →				대 10%p 상향 조정) 비고 비고 관리보수율 0.2%p하향 - → 성과보수율		

항 목	주요 출자 조건(안)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 0%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운용사는 다음의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인센티브	항목 적용조건 추가 성과보수율  ①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①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60%이상을 투자한 경우 10% 이내 ②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70%이상을 투자한 경우 15% 이내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li>외부 출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을 적용하되,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운용사가 제안하고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li> <li>1)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배분을 받지 않음         <ul> <li>2)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배분 기준수익률 IRR 7% 적용</li> </ul> </li> <li>-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하며,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목적 예산을 재원으로 출자한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 기금 등),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li> </ul>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	<ul> <li>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모태펀드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부여가능.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책임조합원, 출자목적 예산을 재원으로 출자한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li> <li>* 행사 가격: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li> <li>원금 *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 경과기간</li> <li>* 행사 기간: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li> <li>* 유한책임조합원 매수권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출자지분을 한도로 함</li> <li>*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li> </ul>			
수탁회사	<ul> <li>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의무화</li> <li>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사무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 의무화 · 단,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			

항 목	주요 출자 조건(안)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기구	업무집행조합원 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항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연보자 기술사 보고 기술사 기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명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생모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비리사           9         번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조합 별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 가능           • 투자의사결정기구 가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참관인 또는 의결권자)은 업무 집행조합원이 가율적으로 결정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직원은 외부전문가로 참석이 불가함
기타	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②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  ③ 자회사 투자 등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후행투자 누적 투자 한도는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  ④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항 목	주요 출자 조건(안)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 으로 제출하여야 함
	⑥ 모태편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⑦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Ⅲ.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순번	가점 항목
1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5%p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출자비율 65%를 가점 상한으로 설정(출자비율 65% 미만도 제안 가능)
2	주목적 투자 조기 집행 계획 제시
3	주목적(학생창업기업) 투자비율 증대방안 제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4	지방소재(서울.인천.경기 외) 기업 투자비율 제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5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영(Co-GP), 기술지주회사와 창업기획자 간 공동운영(Co-GP) 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LP)로 참여
6	조합 조기결성 계획 제시
7	모태펀드 교육계정에서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LP)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대학 이 운용사로 신청한 경우
8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1), 5) 항목 충족에 실패할 경우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6) 항목 충족에 실패할 경우 제재 사항에 해당함
- ※ 2), 3), 4) 항목은 규약에 반영함

####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 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 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 마.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다른 벤처캐피탈 등\*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 말소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벤처캐피탈 등\* 또는 벤처투자조합(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벤처캐피탈 등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

####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 (가결산 포함, <u>미제</u> 출시 선정배제) 기준으로 판정함. 단,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sup>\*</sup>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라.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마.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경력<sup>1)</sup> 또는 기타 투자 경력<sup>2)</sup> 1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 1)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경력
  - 2)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펀드 규모	최소 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3명	

-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 바.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 (3)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5) 제재 사항

-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달리 적용 가능
  - \*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조합 중 조합 조기결성 계획을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제시한 조기 결성 계획 시한을 초과하여 결성한 경우, 차년도 출자사업의 참여 제한 가능
  - \* 단, 계획 대비 출자약정액을 10% 이상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자조합의 투자실적이 제출한 투자계획 대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사업의 참여 제한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

#### Ⅳ.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고
접수	'21. 3. 24.(수) 10:00부터 '21. 3. 31.(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
선정	'21. 5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 V. 지원 방법 및 출자사업 설명회

구분	내용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5.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4. 참조)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http://install.kvic.or.kr		
출자 설명회(안)	일 시 : 2021.3.10.(수)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게시(예정)		

#### VI. 기 타

-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후 조합 결성 이전에 입사를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단,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Ⅷ. 문의 방법

- 엔젤투자본부 : 02-2156-2033, angelfof@k-vic.co.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21. 2 24.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별첨1〉

# 1차 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 및 창업 교육/지원 관련 실적 등
투자집행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역량
사후관리, 밸류업	후속투자 유치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회수(EXIT) 성과
액셀러레이팅	운용사의 액셀러레이팅 역량
가점 등	공고문 [Ⅲ.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2차 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지원 인프라, 지원 사업, 보육 시스템 및 보육 사례
펀드결성 가능성	출자자 적정성, 민간 출자자 모집 역량 등
투자역량	제안펀드 투자 전략 및 경험, 운용사 및 운용인력 투자실적 등
사후관리, 밸류업	사후관리 프로세스, 후속투자 유치 사례 및 역량, 밸류업 사례
수익률	수익 창출 사례, 회수 전략 등

#### 〈별첨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 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